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단522076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망 B의 소송수계인 C

2. D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근

변론 종결 2019. 11. 1.

판결 선고 2019. 11. 22.

주 문

1. 피고 망 B(F생)의 소송수계인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57,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7.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2. 망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8,382,4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에게 28,382,4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경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소외 회사, 피보험자 H,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4.

14.부터 2018. 4. 13.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과 D이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후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8. 6. 15.경 H에 45,057,206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다. 망인은 2018. 7. 2.경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8. 20.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망인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I 이 있는데, I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73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173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57,206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30일째인 2018. 7.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9.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망인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망인의 무자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15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을 뿐인 사실(피고 E은,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L에 대한 급여채권과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2018. 4. 19. 주식회사 M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20.9%, 연체이자율 연 24%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망인이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6. 10.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46,4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8.7. 2. 당시 K조합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22,000,000원이었던 사실,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45,057,206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도 망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한 사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근저당권자인 K조합의 채무를 피고 E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은 피고 E의 망인에 대한 채권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피고E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재산상태까지 고려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D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또는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나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연대보증인 망인의 자력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망인과 피고 D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이 망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에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망인이 보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E은 망인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담보부 채무도 변제하였는바,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17. 5.30.경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양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사실, 피고 E이 2017. 6. 13.경 망인에게 20,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6. 12.경양자 사이에 피고 E이 망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2017. 11. 2.경 소외 회사와 피고 E 사이에 9,470,000원으로 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망인이 피고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 E이 망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E이 위와 같이 망인의 채권자라거나 망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E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E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차량과 임대차보증금을 처분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경기 가평군 소재 저유소에 관하여 2018. 2. 14.경 경매가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E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46,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근저당권자 K조합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2018. 7. 2.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22,000,000원이었고,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망인의 K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122,791,328원을 변제하고 2018. 8. 13.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 E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명목으로 K조합에 2018. 7. 10.경 401,329원, 2018. 8. 8.경 424,909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2,000,000원이고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52,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123,617,566원[= 실제 지급한 피담보채무액 122,791,328원 +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까지 변제한 이자 826,238원(= 401,329원 + 424,909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K조합의 피담보채무액인 122,000,000원만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도 모두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아니하던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등기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소요된 등기비용2,402,2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액배상의 법리는 사해행위가 없었더라면일반채권자가 확보하였을 책임재산 상당액을 회복하여 주는 것이지 수익자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E이 주장하는 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E의 채권액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이 망인의 채권자이므로 피고 E의 채권액 비율을 제외한 부분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이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8,382,434원(= 152,000,000원 - 123,617,56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5,057,2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8,382,434원과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2층 호 62.19㎡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경기도 파주시 권 1042㎡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042분의 72.65